

[일련번호 : 3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구세입처리 지연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,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“사용료의 납무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회계법」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동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 세입처리를 최소 14일에서 최대 32일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수입금 처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[표]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금 처리 등 부적정 내역

연번	사용자명	수납일	사용기간	사용료(원)	세입처리	지적사항
1		23.9.8.		15,000	23.10.10.	세입처리 지연(32일)
2		23.9.18.		15,000	23.10.10.	세입처리 지연(23일)
3		24.8.19.		40,000	24.9.5.	세입처리 지연(17일)
4		24.11.18.		20,000	24.12.2.	세입처리 지연(14일)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□□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